

BNK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펀드코드: EU288]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BNK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2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2	3	4	5	6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 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90% 이하를 국내주식에 투자하고, 50% 미만을 국내채권에 투자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벤처기업 신주 등에 15% 이상, 이를 포함하여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 기업의 신주·구주 (이하 "벤처기업 또는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 주식"이라 함)에 50% 이상 투자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 위험, 유동성 제약 발생의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BNK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p>[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증권(혼합주식형)집합투자기구입니다.</p> <p>[투자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벤처기업 신주^{주1)} 15%이상, 이를 포함하여 벤처기업 또는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 주식^{주2)}에 50% 이상을 투자하고 그 밖에 IPO투자, 국공채 및 우량 채권 등 투자를 병행하여 이에 따른 자본차익을 추구합니다. <p>주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투자 주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투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IPO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모주로서 적정가치 대비 투자 메리트가 높은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상장 후 예상되는 기업가치 및 오버행을 고려해 확약기간 결정 벤처기업 구주매수+코스닥 헷지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즈니스모델이 견고하고 재무구조가 우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으로 매수 포트폴리오를 구성 코스닥150선물 매도를 통해 시장 리스크 헷지 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공채 및 신용등급 AA- 이상의 우량 채권 투자를 통해 유동성 관리 및 안정적인 이자수익 추구 시장상황에 따른 제한적 초과수익전략 실행 보조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SPAC 투자: 상장 이후 수급적 요인으로 액면가를 하회하는 경우, M&A가 예상 또는 확정된 기업 Event Driven: 필요시 유상증자, 블록딜 등의 이벤트를 활용하여 추가 수익을 추구 <p>※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p>																																										
	<p>분류</p> <p>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p>																																										
투자비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클래스 종류</th> <th colspan="4">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 : %)</th> <th colspan="5">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 : 천원)</th> </tr> <tr> <th>판매 수수료</th> <th>총보수</th> <th>판매보수</th> <th>동종 유형 총보수</th> <th>총보수·비용</th> <th>1년</th> <th>2년</th> <th>3년</th> <th>5년</th> <th>10년</th> </tr> </thead> <tbody> <tr> <td>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td> <td>납입금액의 1.0% 이내</td> <td>1.145</td> <td>0.50</td> <td>1.100</td> <td>1.145</td> <td>216</td> <td>336</td> <td>460</td> <td>722</td> <td>1,471</td> </tr> <tr> <td>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td> <td>없음</td> <td>1.545</td> <td>0.90</td> <td>1.400</td> <td>1.545</td> <td>158</td> <td>322</td> <td>492</td> <td>848</td> <td>1,851</td> </tr> </tbody> </table>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 : %)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 :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1.0% 이내	1.145	0.50	1.100	1.145	216	336	460	722	1,47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없음	1.545	0.90	1.400	1.545	158	322	492	848	1,851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 : %)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 :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1.0% 이내	1.145	0.50	1.100	1.145	216	336	460	722	1,47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없음	1.545	0.90	1.400	1.545	158	322	492	848	1,851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5% 이내	0.895	0.25	0.930	0.895	141	236	334	543	1,14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1.095	0.45	1.060	1.095	112	229	350	606	1,340

- (주1)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 (주2) 종류A형과 종류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주식]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공모펀드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혼합주식형)(%)				운용 경력년수 (공사모 포함)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우람	1983	책임 (수석매니저)	12개	2,005억	-	-	-	-	9년 4개월
장주은	1992	부책임 (매니저)	-	-	-	-	-	-	8년 3개월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김우람- 3개, 364억 / 장주은- 0개, 0억]

[채권]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공모펀드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혼합주식형)(%)				운용 경력년수 (공사모 포함)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변준	1977	책임 (수석매니저)	14개	9,389억	-	-	-	-	18년 2개월
왕희지	1995	부책임 (매니저)	14개	4,168억	-	-	-	-	7년 2개월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변준- 0개, 0억 / 왕희지- 0개 0억]

운용전문
인력

-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 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 및 구주에 투자하며, 이 중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는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 및 해당 투자신탁에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이 설정일 이후 신규상장 종목의 부재, 공모주 물량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p>세제 혜택 및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투자원본 손실위험</td> <td>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td> </tr> <tr> <td>시장위험 및 개별위험</td> <td>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이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td> </tr> <tr> <td>주식가격 변동위험</td> <td>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국내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td> </tr> <tr> <td>벤처기업 투자위험</td> <td>이 투자신탁은 기술력과 장래성을 갖추고 있으나 경영기반과 자본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 기업인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합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비해 높은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행기업의 재무상황악화, 신용상태 악화 등으로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 </tr> <tr> <td>공모주 투자위험</td> <td>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공모주(벤처기업 신주 등 포함)에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합니다. 공모주(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는 과거 거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보다 더 큰 가격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배정수량 하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추가적인 가격상승으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 시 개별종목에 일반 공모펀드에서 적용하는 동일종목 투자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하게 기관경쟁률이 저조한 경우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한 물량 전체를 인수하여야 하는 높은 인수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td> </tr> <tr> <td>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혜택 미적용 위험</td> <td>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법에 따른 투자요건을 충족하고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 보유를 확보한 경우,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운용과정에서 상기 비중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우선배정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td> </tr> <tr> <td>세제혜택 미적용위험</td> <td>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기간 내 가입한 투자자가 3년 이상 투자 시, 1인당 2천만원까지 1과세연도에 한해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설정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의 15%이상을 벤처기업신주에 투자하고, 이를 포함하여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에 코스닥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구주에 50%를 투자하여야 하며, 투자기간 내에 평균수치가 상기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펀드의 운용과정에서 해당자산의 물량 부족 등의 사유로 편입이 여의치 않거나 코스닥시장 및 관련시장의 악화 등이 예상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으로 해당자산을 매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세제혜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td> </tr> <tr> <td>SPAC의 사업목적 특수성에 따른 위험</td> <td>SPAC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SPAC의 존속기간 동안 합병대상법인을 찾지 못하거나 합병에 실패할 경우 해당 SPAC은 청산되며 이에 따라 SPAC투자의 주요한 목적인 합병차익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SPAC은 사전에 합병대상회사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SPAC의 경영진 및 발기인들의 M&A경험과 투자발굴(Deal Sourcing)능력 등이 SPAC의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관련 제도 신설 및 변경 등에 따라 투자에 대한 새로운 제약조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신탁이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 </tr> <tr> <td>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td> <td>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td> </tr> </tbody> </table>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이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국내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기술력과 장래성을 갖추고 있으나 경영기반과 자본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 기업인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합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비해 높은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행기업의 재무상황악화, 신용상태 악화 등으로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공모주(벤처기업 신주 등 포함)에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합니다. 공모주(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는 과거 거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보다 더 큰 가격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배정수량 하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추가적인 가격상승으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 시 개별종목에 일반 공모펀드에서 적용하는 동일종목 투자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하게 기관경쟁률이 저조한 경우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한 물량 전체를 인수하여야 하는 높은 인수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혜택 미적용 위험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법에 따른 투자요건을 충족하고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 보유를 확보한 경우,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운용과정에서 상기 비중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우선배정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제혜택 미적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기간 내 가입한 투자자가 3년 이상 투자 시, 1인당 2천만원까지 1과세연도에 한해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설정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의 15%이상을 벤처기업신주에 투자하고, 이를 포함하여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에 코스닥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구주에 50%를 투자하여야 하며, 투자기간 내에 평균수치가 상기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펀드의 운용과정에서 해당자산의 물량 부족 등의 사유로 편입이 여의치 않거나 코스닥시장 및 관련시장의 악화 등이 예상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으로 해당자산을 매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세제혜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SPAC의 사업목적 특수성에 따른 위험	SPAC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SPAC의 존속기간 동안 합병대상법인을 찾지 못하거나 합병에 실패할 경우 해당 SPAC은 청산되며 이에 따라 SPAC투자의 주요한 목적인 합병차익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SPAC은 사전에 합병대상회사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SPAC의 경영진 및 발기인들의 M&A경험과 투자발굴(Deal Sourcing)능력 등이 SPAC의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관련 제도 신설 및 변경 등에 따라 투자에 대한 새로운 제약조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신탁이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이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국내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국내 주식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기술력과 장래성을 갖추고 있으나 경영기반과 자본력이 부족한 창업 초기 기업인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합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비해 높은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행기업의 재무상황악화, 신용상태 악화 등으로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벤처기업투자신탁으로서 공모주(벤처기업 신주 등 포함)에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합니다. 공모주(새로이 기업공개가 되는 주식)는 과거 거래 전례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주식보다 더 큰 가격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배정수량 하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으로 유리한 가격에 그리고 충분한 물량을 취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유리한 가격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매도금지규정(Lock-up)에 종속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추가적인 가격상승으로 인해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 시 개별종목에 일반 공모펀드에서 적용하는 동일종목 투자한도에 구애받지 않고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하게 기관경쟁률이 저조한 경우 수요예측 참여 시 신청한 물량 전체를 인수하여야 하는 높은 인수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공모주 우선배정혜택 미적용 위험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법에 따른 투자요건을 충족하고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5일 이상 의무 보유를 확보한 경우,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의 운용과정에서 상기 비중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우선배정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제혜택 미적용위험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기간 내 가입한 투자자가 3년 이상 투자 시, 1인당 2천만원까지 1과세연도에 한해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설정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의 15%이상을 벤처기업신주에 투자하고, 이를 포함하여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에 코스닥상장 중소·중견기업의 신주·구주에 50%를 투자하여야 하며, 투자기간 내에 평균수치가 상기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펀드의 운용과정에서 해당자산의 물량 부족 등의 사유로 편입이 여의치 않거나 코스닥시장 및 관련시장의 악화 등이 예상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으로 해당자산을 매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세제혜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SPAC의 사업목적 특수성에 따른 위험	SPAC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SPAC의 존속기간 동안 합병대상법인을 찾지 못하거나 합병에 실패할 경우 해당 SPAC은 청산되며 이에 따라 SPAC투자의 주요한 목적인 합병차익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SPAC은 사전에 합병대상회사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SPAC의 경영진 및 발기인들의 M&A경험과 투자발굴(Deal Sourcing)능력 등이 SPAC의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관련 제도 신설 및 변경 등에 따라 투자에 대한 새로운 제약조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신탁이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BNK배당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의 자투자신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기준가격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전일 집합투자기구 산출총액-부채총액)/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BNK자산운용(주) (대표번호 : 02-6910-11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bnkasset.co.kr)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6년 04월 01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 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수익증권(종류S-T 및 S-P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집합투자기구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수익증권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펀드, 전문투자자 및 기관(F)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기타 내국법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Wrap전용(W)	Wrap Account용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3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bnkasset.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bnkasset.co.kr)